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7fa;">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5%;">요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1. ~2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생략) 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마. ~ 아. (생략)</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1통</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8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생략) 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마. ~ 아. (생략)	1통	800원		<p>[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7fa;">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5%;">요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100px; vertical-align: top;">1. ~2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사.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사. (현행과 같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생략) 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마. ~ 아. (생략)	1통	8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사.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09. 9. 29 개정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3일
3. 상 정 일 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12. 18)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정하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임묵)

○ 본 개정 조례 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